

# 검 토 의 견 서

- 일 시 : 2020. 9. 3.(목)
- 장 소 :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
- 안 건 : 「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 
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 
(의안번호 제1831호, 문장길 의원 )

행 정 국

행정국장 김태균입니다.

존경하는 이현찬 위원장님!

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!

문장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831호,

「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(안)」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

드리겠습니다.

본 개정조례(안)의 주요내용은

-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기여한 공적이 큰 개인 및 단체 등을 표창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으로

민주화운동의 올바른 이해를 위한 홍보와 정신계승을

위하여 노력해온 개인과 단체 등의 공로를 인정함으로써

올바른 역사 인식 확립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

판단됩니다.

집행부는 개인과 단체의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을 위한 자발적이며 주체적인 참여와 헌신의 공로를 인정하고 예우를 다 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하며 개정조례(안)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바입니다.

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.

2020. 9. 3.

행정국장 김 태 균